

공 고**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9-693호****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77호(2007.12.27)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호(2009.1.23), 주택과-15391 (2009.8.13)호 및 주택과-16887(2009.9.7)호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 결정된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종로구청(주택과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.

2009년 10월 9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사업의 명칭 :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시행위치 : 종로구 옥인동 47-64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 : 30,282.4㎡(대지면적 26,759.7㎡, 정비기반시설 3,522.7㎡)

라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○ 사업시행자 :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○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종로구 옥인동 47-253

마. 건축계획

○ 건축규모 : 지하2층/지상5층, 아파트 12동 300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
○ 건축면적 : 9,094.93㎡(33.99%)

○ 연 면 적 : 69,381.04㎡(132.63%)

○ 용 도 : 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

바.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2012. 3.

사. 공람사항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(생략 :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음)

아. 공람기간 : 2009. 10. 9. ~ 2009. 10. 23.(15일간)

자. 공람장소

○ 종로구청 주택과(☎731-1401)

○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723-8249)